

# 제153차 건설기술심의회소위원회 의결사항

심의일자 : 2023. 8. 2.(서면심의)

## □ 안건명 : 동부지사 순수제조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

위 안건에 대한 건설기술심의회소위원회 심의결과 아래 주요 심의내용 및 별첨 위원별 채택의견을 보완하는 것으로 「조건부채택」 의결함.

### 【주요 심의내용】

- 순수제조설비 공사 수행기간에 대해 설계 용역업체의 감리용역 수행 여부, 설계 용역회사가 감리용역까지 동시 수행 가능한 지 여부 및 감리용역 수행 시 감리용역비 반영 여부의 검토 필요
- 설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시설물(안전난간, 안전표지판 등) 설치 검토
- 기계, 전기분야의 자동제어설비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으로서 기타 기존 제어설비와 상호 신뢰성, 안정성, 확장성, 호환성 있는 시스템 구성
- 순수제조설비 개선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에 있어 설비개선으로 인한 환경영향요인(대기, 수질 등)이 있을 경우 환경오염 관련 법규 및 규정의 기준치를 준수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수행하시기 바람

첨부 건설기술심의 채택의견서 각 1부.

# 건설기술심의(용역발주) 채택의견서

○ 안건명 : 제153차 동부지사 순수제조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

| 분 야       | 채 택 의 견  | 비 고 |
|-----------|--|-----|
| 플랜트<br>설비 | <p>1.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 적정성 검토</p> <p>1) 동부지사 순수제조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획(안)에 의하면 설계용역 착수 및 준공 일정(예정)이 2023년 10월 ~ 2024년 3월(6개월)로 계획 되어 있으나 과업 내용서에는 용역 착수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순수제조설비 공사 준공일까지로 되어 있는 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업체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후 순수제조설비 공사 준공일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를 용역 준공일로 본다면 공사 계약후 공사 준공기간까지 수행하는 업무인 감리용역까지 포함하게 되어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게되므로 설계용역 준공일의 재검토가 필요함.</p> <p>2) 순수제조설비 공사 수행기간에 대해 설계 용역업체의 감리용역 수행 여부, 설계 용역회사가 감리용역까지 동시 수행 가능한 지 여부 및 감리용역 수행시 감리용역비 반영 여부의 검토가 필요함.</p> <p>3) 만일 동부지사가 감리용역없이 직접 감독하여 공사 준공기간(2024년 12월 31일)까지를 설계용역의 준공기간으로 본다면 설계용역 완료후 공사 준공기간까지의 공사 용역범위 내용이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어 있으므로 용역범위 내용의 추가 보완 필요함</p> <p>2. 과업내용서 추가보완 사항</p> <p>1) 과업내용서 내용 추가 보완 필요<br/>(별첨 : 과업내용서 적색부분 참조)</p> |     |
| 종합의견      | 과업내용서 내용 일부 수정필요하고 설계용역 준공기간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함  |     |

2023년 8월 2일

검토위원 : (서명)

# 건설기술심의(용역발주) 채택의견서

○ 안건명 : 제153차 동부지사 순수제조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

| 분 야                      | 채 택 의 견  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|
| 설계시<br>고려사항<br>(제1장22.나) | <p>1. 2)항 내용 변경(수정)</p> <p style="margin-left: 40px;">&lt;당초&gt;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<br/>&lt;변경&gt; 설계변경의 최소화<br/>※ 공사비는 설계변경내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나,<br/>당초 내용은 공사비 증액을 전제로 하였음.</p> <p>2. 아래 내용 추가</p> <p>1) 순수공급 중단없이 기존설비 교체방안 검토<br/>※ 순수공급이 중단되면 지역난방수 공급 및 자원회수시설<br/>가동 중단됨.</p> <p>2) 설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<br/>안전시설물(안전난간, 안전표지판 등) 설치 검토</p> |     |
| 종합의견                     | 조건부 채택  |     |

2023년 8월 2일

검토위원 : (서명)

# 건설기술심의(용역발주) 채택의견서

○ 안건명 : 제153차 동부지사 순수제조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

| 분 야    | 채 택 의 견  | 비 고 |
|--------|--|-----|
| 전<br>기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67조 및 『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』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위한 사업 단계별 “안전보건대장“ 작성</li><li>국내·외의 순수 제조설비 운영현황 조사 및 기존설비와 신설설비의 비교 분석 제시</li><li>기계, 전기분야의 자동제어설비는 통합제어관리시스템으로서 기타 기존 제어설비와 상호 신뢰성, 안정성, 확장성, 호환성 있는 시스템 구성</li><li>기존설비와 신설설비의 전력사용량 분석 검토</li></ol> |     |
| 종합의견   |  |     |

2023년 8월 2일

검토위원 : (서명)

# 건설기술심의(용역발주) 채택의견서

○ 안건명 : 제153차 동부지사 순수제조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

| 분 야  | 채 택 의 견  | 비 고 |
|------|--|-----|
| 환경   | <p>아. 환경영향 저감 방안 검토</p> <p>1) 환경오염 관련 법규 및 규정의 기준치 준수 및 현장여건에 맞는 저감방안을 검토하여 수행 (p13)</p> <p>순수제조설비 개선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수행에 있어 설비개선으로 인한 환경영향요인(대기, 수질 등)이 있을 경우 환경오염 관련 법규 및 규정의 기준치를 준수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.</p> |     |
| 종합의견 |  |     |

2023년 8월 2일

검토위원 : (서명)

# 건설기술심의(용역발주) 채택의견서

○ 안건명 : 제153차 동부지사 순수제조설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

| 분 야  | 채 택 의 견   | 비 고 |
|------|---|-----|
| 총 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과업내용서 과업수행계획서에 다음 사항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.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설계품질 보증계획 및 성능보증 방안</li> </ul> </li> <li>○ 유지관리를 위한 동선을 확보하고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공간 배치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.</li> <li>○ ‘市 기술심의 및 市 계약심사 등’의 아래 내용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.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를 기본설계 완료시점(2개월전)에 받아야 한다. 단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.</li> <li>→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술심의를 기본설계 완료전에 받아야 한다.</li> </ul> </li> <li>○ (참고) 친환경제품 사용 등에 대하여 향후 실시설계 시 반영할 것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공사설계서에는 녹색제품 사용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. 이 때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(<a href="http://gmc.greenproduct.go.kr">http://gmc.greenproduct.go.kr</a>)을 활용하여 공사현장에 적합한 건설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.</li> <li>- 종합공사 40억 이상, 전문공사·전기공사·정보통신공사·소방시설공사 등 3억원 이상 공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직접한 직접 구매품목을 녹색제품으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공사내역서의 관급(지급)자재를 반영하여야 한다.</li> <li>- 과업 수행결과 녹색제품 설계 반영실적과 증빙자료를 정산·보고하여야 한다.(용역업체 → 발주처 → 기후환경정책과)</li> </ul> </li> </ul> |     |
| 종합의견 |   |     |

2023년 8월 2일

검토위원 : 기술심사담당관 (서명)